

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-22호

「특허법」 제61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, 「실용신안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「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(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-19호)을 다음과 같이 변경(연장)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30일

지식재산처장

인공지능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

우선심사 대상	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, 아래 ①, ②를 모두 만족할 것	
	① 인공지능 관련 특허분류(CPC)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< 인공지능 관련 특허분류(CPC) > B25J 9(로봇 매니플레이터), B60W(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), B62D 57(차량 조향 및 주행기구), G05B 13(인공지능 적응제어 시스템), G05B 19(지능형 제어시스템), G16B 40(인공지능 생물정보학 기계학습), G05D(물리량 제어 시스템), G06N 3~7, 20(인공지능 신경망 및 학습)	
	② 인공지능 관련 제품,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이거나 인공지능·신경망·학습방법·시스템 등을 국내에서 개발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	
신청가능한 기간	'26. 2. 1. ~ '26. 10. 31.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※ 한시적 시행 후 '26년 11월 연장여부 검토 예정	
우선심사 신청료	특허출원 20만원 /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※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3조제1항제7호	
제출할 서류 (입증할 내용)	○ 공통 제출서류 :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* * ①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②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	
	○ 국내개발기업 여부 입증서류 예) 공장등록증명서, 물품공급계약서, 시스템 공급계약서, 납품확인서, 품질협약서, 공시된 사업보고서, 연구개발협약서 등 국내에서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	○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) 협약서,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